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289
----------	------

2024년 12월 17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감
- 회부일자 : 2024년 10월 18일
- 상정일자 :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9차 교육위원회
(2024년 12월 17일 상정,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고영갑 총무과장)

1. 제안이유

-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 법령 명확화 및 주차장 사용료의 감면 기준 완화 등 범위 확대
- 이용자 및 시민의 주차장 이용 혜택 및 편의 향상
- 한자어 및 관용적 표현을 쉽고 간결한 용어로 정비하여 내용 이해도 제고

2. 주요내용

- 가. 【내용 변경】 근거 법령의 명칭 개정 적용과 이용자의 편의 향상을 위한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규정 내용 변경(안 별표)
- (관련 법령 개정) 사용료 감면 근거 법령의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법률명 적용
 - (친환경·저공해 정책 부응) 충전을 목적으로 주차장에 출입한 전 기자동차에 대하여 일정 시간 동안의 사용료 면제 규정 신설
 - (저출산 해소 방안 확대) 두 자녀 이상 가정(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을 대상으로 적용되었던 사용료 할인율을 상향 규정(30% ⇒ 50%)
- 나. 【용어 정비】 한자어 및 관용적 표현을 쉽고 간결한 용어로 정비(안 제7조, 제8조 및 별표)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심혁보)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4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2289호로 제출되어 2024년 10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관련법의 명칭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사용료의 명제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한편 용어의 정비를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1) 사용료 감면 대상자의 확대(조례안 [별표] <비고> 6.)

- 금번 개정조례안은 [별표] <비고> “6.”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대한 시간별 감면사항을 신설하고(안 [별표] <비고> 6-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한 감면률을 50%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먼저 전기자동차의 경우 종전 [별표] <비고> “6. 아”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상 저공해자동차로 분류되어 사용료의 50%를 감면받고 있었으나,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충전시설 사용을 위해 입차하는 경우 서울시와 달리 별도의 면제조항이 없어 주차장 사용료를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지난 2016년 제268회 정례회에서 전기자동차의 경우 공영주차장 전기충전시 1시간 이내는 주차요금을 면제하

고, 1시간 초과부터는 50%를 할인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¹⁾하였는바,

조례간 적용의 형평성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전기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전기자동차에 대한 감면률을 명확히 규정한 것은 그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 다음으로 서울시교육청은 부설주차장의 경우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는 두 자녀의 경우 30%, 세 자녀의 경우 50%의 사용료 감면을 받아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3년 제316회 임시회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소 측면에서 자녀 수에 차등 없이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인 경우 사용료를 50% 감면하도록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²⁾하였습니다.

이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례간 적용 형평성 및 다자녀에 대한 혜택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 해결에 일조한다는 측면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기타

- 동 개정조례안은 [별표] <비고> “6. 바”에 규정되어 있는

1) 서울특별시의회 제268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기열, 박진형 의원 외 22명 공동발의(2016.6.10.제출), 원안가결(2016.6.27.)

(제안 요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 지정, 요금감면 및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전기자동차에 대한 우선주차구획 설치기준과 주차요금 감면 기준 등을 정하여 시민의 전기자동차 이용을 활성화하고 민간기업의 충전기 설치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서울특별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지향 의원 외 34명 공동발의(2023.2.6.제출), 원안가결(2023.3.10.)

(제안 요지) OECD 가입국 중 최하위 출산율을 기록할 정도로 국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에 따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고, 교통·문화시설 이용, 양육 교육 지원 등의 사업에 반영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를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서울시는 다자녀 혜택 대상이 기존 3자녀에 머물러 있어, 지원대상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서울시 다자녀 지원 대상을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2자녀로 확대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50% 감면 대상(3자녀→2자녀)을 변경하고자 함.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³⁾로 하고, 안 제7조 3호의 ‘적재한’을 ‘실은’으로, 안 제8조 ‘태만히 하여’를 ‘게을리하여’로, [별표] <비고>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각각 수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상위법령의 명칭 개정사항과 용어의 정리는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시행 2021. 4. 6.] [법률 제17883호, 2021. 1. 5., 일부개정] 제명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적재한” 을 “실은” 으로 한다.

제8조 중 “태만히 하여” 를 “게을리하여” 로 한다.

별표의 비고 제3호 중 “감안하여” 를 “고려하여” 로 한다.

별표의 비고 제4호 중 “감안하여” 를 “고려하여” 로 한다.

별표의 비고 제5호 중 “감안하여” 를 “고려하여” 로 한다.

별표의 비고 제6호의 바목 중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를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로 한다.

별표의 비고 제6호의 자목을 차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는 충전을 위해 입차하는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

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차. 다등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별표의 비고 제6호의 차목부터 파목까지를 각각 카목부터 하목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사용 제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거절할 수 있다.</p> <p>1. 2. (생 략)</p> <p>3.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p> <p>4. ~ 7. (생 략)</p>	<p>제7조(사용 제한)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 실 은 ----</p> <p>4. ~ 7. (현행과 같음)</p>																				
<p>제8조(변상 책임) 사용자가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의무를 <u>태만히 하여</u> 시설물 등을 파손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p>	<p>제8조(변상 책임) ----- ----- <u>게을리하여</u> ----</p>																				
<p>[별표]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제4조 관련)</p> <p>(단위 : 원-1구획당)</p>	<p>[별표]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제4조 관련)</p> <p>(단위 : 원-1구획당)</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cccccc;"> <th style="width: 20%;">구분</th> <th style="width: 30%;">시간주차 (1회 주차시 5분당)</th> <th style="width: 50%;">정기주차</th> </tr> </thead> <tbody> <tr> <td>1급지</td> <td>400</td> <td rowspan="3">60,000</td> </tr> <tr> <td>2급지</td> <td>250</td> </tr> <tr> <td>3급지</td> <td>150</td> </tr> </tbody> </table> <p>※ 주차장 요금은 해당 급지 주차요금에 공시지가 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공시지가변수”는 주차장이 위치한 법정동 평균공시지가를 서울시 평균공시지가로 나누어 4제곱근한 값으로,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며, 5년 마다 산정하여 적용한다.)</p> <p><비고></p> <p>1. 2. (생 략)</p> <p>3.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관의 실정에 따라 30% 범위에서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p>	구분	시간주차 (1회 주차시 5분당)	정기주차	1급지	400	60,000	2급지	250	3급지	150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cccccc;"> <th style="width: 20%;">구분</th> <th style="width: 30%;">시간주차 (1회 주차시 5분당)</th> <th style="width: 50%;">정기주차</th> </tr> </thead> <tbody> <tr> <td>1급지</td> <td>400</td> <td rowspan="3">60,000</td> </tr> <tr> <td>2급지</td> <td>250</td> </tr> <tr> <td>3급지</td> <td>150</td> </tr> </tbody> </table> <p>※ 주차장 요금은 해당 급지 주차요금에 공시지가 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공시지가변수”는 주차장이 위치한 법정동 평균공시지가를 서울시 평균공시지가로 나누어 4제곱근한 값으로,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며, 5년 마다 산정하여 적용한다.)</p> <p><비고></p> <p>1. 2. (현행과 같음)</p> <p>3.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관의 실정에 따라 30% 범위에서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p>	구분	시간주차 (1회 주차시 5분당)	정기주차	1급지	400	60,000	2급지	250	3급지	150
구분	시간주차 (1회 주차시 5분당)	정기주차																			
1급지	400	60,000																			
2급지	250																				
3급지	150																				
구분	시간주차 (1회 주차시 5분당)	정기주차																			
1급지	400	60,000																			
2급지	250																				
3급지	150																				

4. 주차여건 등 기관의 실정을 감안하여 해당기관을 이용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1시간까지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5. 주차여건, 기관의 운영 등을 감안하여 정기주차 대상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6. 다음의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가. ~ 마. (생략)
 - 바. 「5·18 민주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가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 사 ~ 아. (생략)
 - 자. 다등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두 자녀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 세 자녀 이상은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 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 카.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 타.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감면대상자 및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파.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7. 전체 주차면의 50% 이상은 일반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주차여건 등 기관의 실정을 **고려**하여 해당기관을 이용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1시간까지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5. 주차여건, 기관의 운영 등을 **고려**하여 정기주차 대상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6. 다음의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가. ~ 마. (현행과 같음)
 - 바. 「**5·18 민주유공자에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가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 사. ~ 아. (현행과 같음)
 - 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는 충전을 위해 입차하는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 차. **다등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 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 타.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 파.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감면대상자 및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하.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7. 전체 주차면의 50% 이상은 일반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